



튀니지,

외화 반출입 정보

리년 9/22 기준

튀니지 출·입국 시, “외환신고 (Déclaration des devises)” 와 관련하여 튀니지 관세청 웹사이트 게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보다 정확한 내용은 튀니지 관세청 웹사이트(<https://www.douane.gov.tn/devises-et-change/>)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

1. 튀니지 출·입국 시 외환신고

- (신고대상 금액) 튀니지 화폐 5천 디나르 또는 그 이상 상당의 외환
- 신고대상 금액을 소지한 채 이뤄지는 모든 튀니지 입국, 출국, 경유에 대해 세관에 외환 신고 필요
- 외환 반입 신고증은 타인에게 양도 불가

2. 비체류 여행객

- 출국시 5천 디나르 이상의 금액을 반출하는 경우, 당초 입국 시 세관에 외환 반입 신고를 한 경우에만 반출 가능
- 3만 디나르 이상의 외환을 반출하기 위해서는 공식금융기관(은행 등)을 통한 이체 필요
- 외환반입신고서는 입국 후 3개월 간 유효하고, 1회 여행에 대해 사용될 수 있음.
- 여행을 목적으로 반입했지만 미처 다 사용하지 못한 외환의 경우, 최대 7일 영업일 기간 내에 다시 튀니지로 입국할 경우, 미사용 외환만큼 재반입 가능

3. 여행 목적 외환 반출 허가 (Tourist Allowance)

가. 대상자

- 튀니지 거주 내국인 또는 거주자 신분의 외국인
- 튀니지 거주자 신분을 가진 부모의 외국에서 유학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학생
- 비거주자로 튀니지로 역 이민한 내국인

나. 할당금액 : 1년(1.1~12.31.) 기준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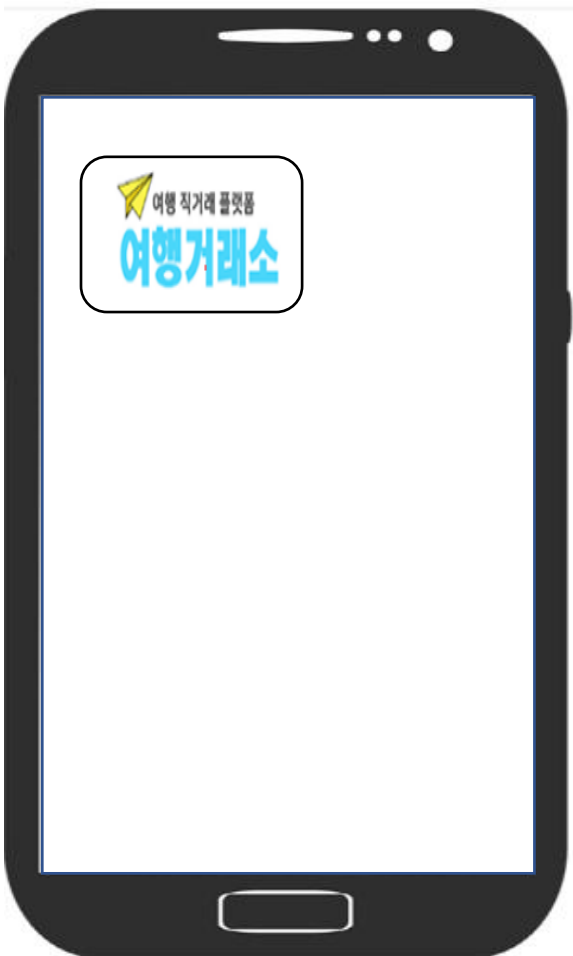
- 6,000dinar
- 3,000dinar : 10세 미만 아동
- 3,000dinar : 저축된 급여의 송금이 허용된 튀니지 거주 외국인. 10세 미만 아동은 1500dinar
- 6,000dinar : 여행자로 외화반출이 허용되는 튀니지 거주 외국인

다. 여행 목적 외환 반출 허가 요건

- 여행자에 대한 반출 허용 외화 한도액은 1회 또는 여러 회에 걸쳐 할당될 수 있으며, 미사용 할당액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음.
- 외화반출 허가는 유효기간 2개월에 1회 출국에만 유효
- 여행 목적으로 외환 반출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여행을 가지 않은 경우에는, 반출 허가 만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15일 내에 동 금액을 차후 여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.
- 6000dinar의 여행자에 대한 외화 할당을 요청하기 위해서, 외국인 거주자는 은행의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하며, 동 은행 신고서에는 여권에 기록된 '여행자에 대한 외화 할당관련 기록', 은행의 직인과 서명이 표기 되어야함.
 - 외국인 거주자는 이 신고서와 함께 월간 '여행자에 대한 외화 할당' 내용을 튀니지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함.

출처 : 주 튀니지 한국 대사관 (210922)

[공지] 여행 직거래 플랫폼 '여행거래소' 안드로이드용 (갤럭시 핸드폰) 앱 설치 안내



'여행거래소' 검색 후 설치

-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
-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
-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
- 현지 생생정보
-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

'아이폰'용은 없어요 (개발하지 않음)

www.GV10.com 참고